

5. 근거법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출 근거

- 본 안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을 위해 사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내용

- 무인기산업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2년 9월 지정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^{참고1)} 대상지 중 고성군 사업구간인 1구역(총 111,201㎡)에 대해 기존 농림지역 70,218㎡^{참고2)}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참고 1)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현황

- (위 치)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-1번지 일원
- (사업기간) 2019 ~ 2026
- (사업비) 91,150백만원(국비 15,150, 군비 11,000, 민자(LH) 65,000)
- (개발면적) 371,983㎡(1구역 111,201㎡, 2구역 260,782㎡)
- (사업내용)
 - 1구역: 드론전용비행시험장, 관제시설, 기업지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
 - 2구역: 무인기종합타운 산업단지 부지조성

참고 2) 용도지역 변경대상지 현황

- (면 적) 70,218㎡
- (주요지목) 답 50,040㎡(71.3%) > 구거 7,732㎡(11.0%) > 잡 6,004㎡(8.6%)
- (소유자별) 사유 49,622㎡(70.7%), 국유 11,906㎡(17.0%), 군유 8,690㎡(12.3%)

○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관련기업 유치 등 사업의 연계·확장 측면에서 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건의된 주민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함께, 실시계획 미승인 등 현재 추진현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계획에 대한 상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6. 2. 찬성의견 채택